

※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xi.co.kr/dunsan) 또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둔산 자이 아이파크*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견본주택 방문 안내
 - 신종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로 견본주택 인원제한이 해제되어 견본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객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수에 따라 관람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의 정부방침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홈페이지(http://xi.co.kr/dunsan)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청약 및 사전접수,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은 기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
- 둔산 자이 아이파크* 분양상담 전화(☎042-716-1245),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 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행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사	시공사	시공사
상호	송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법인등록번호	160171-0005212	110111-0002694	110111-67400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00번길 68, 2층(갈마동)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 33(청진동, 그랑서울)	서울특별시 용인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II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호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광진건설엔지니어링	(주)지이엔씨
금액	₩ 6,687,971,400	₩ 1,033,553,700	₩ 709,500,000

(단위 : 원 / 부가치세 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II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23.08.28(월)		2023.08.29(화) ~ 2023.08.30(수)		2023.09.05(화)		2023.09.08(금) ~ 2023.09.14(목) ~ 2023.09.20(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30)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3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곽영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주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341-10번지 - 문의 : ☎ 042-716-1245 * 자격확인서류 및 청약관련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 * 접수 접수순수의 과밀로 인한 접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IV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비과 - 5347호(2023.08.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2층, 127세대, 총 1,974세대 중 일반분양 아파트 1,3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648세대 1기관추천 특별공급 13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3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15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6세대 포함)
- 입주예정일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주택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계			
민영주택	2023000330	01	059,9900A	59A	59,9900	23,2600	83,2500	36,7800	120,0300	32,9100	19	2	-	3	1	-	6	13	3
		02	059,9900B	59B	59,9900	23,9800	83,9700	36,7800	120,7500	33,2000	105	11	4	18	9	3	45	60	5
		03	076,9900	76	76,9900	23,8800	100,8700	47,2000	148,0700	39,8800	149	15	16	26	13	4	74	75	5
		04	084,9900A	84A	84,9900	26,3700	111,3600	52,1000	163,4600	44,0200	418	42	43	75	37	12	209	209	24
		05	084,9900B	84B	84,9900	27,7400	112,7300	52,1000	164,8300	44,5700	134	13	13	24	12	4	66	68	5
		06	084,9900C	84C	84,9900	27,5500	112,5400	52,1000	164,6400	44,4900	218	22	23	39	19	6	109	109	7
		07	084,9900D	84D	84,9900	26,5300	111,5200	52,1000	163,6200	44,0900	144	14	14	25	12	4	69	75	6
		08	084,9900E	84E	84,9900	25,6800	110,6700	52,1000	162,7700	43,7500	80	8	8	14	7	2	39	41	2
		09	084,9900F	84F	84,9900	28,1900	113,1800	52,1000	165,2800	44,7400	64	6	6	11	5	1	29	35	2
		10	099,9900	99	99,9900	31,3100	131,3000	61,3000	192,6000	51,9100	19	-	2	-	-	-	2	17	3
		11	145,1800	145	145,1800	46,3900	191,5700	89,0000	280,5700	75,7300	3	-	-	-	-	-	-	3	-
합계										1,353	133	129	235	115	36	648	705	62	

공급금액 (단위 : 원)			
주택형(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최저	최고
59A	19	497,000,000	532,000,000
59B	105	447,000,000	492,000,000
76	149	538,000,000	598,000,000
84A	418	629,000,000	699,000,000
84B	134	602,000,000	665,000,000
84C	218	619,000,000	689,000,000
84D	144	629,000,000	699,000,000
84E	80	602,000,000	672,000,000
84F	64	619,000,000	689,000,000
99	19	842,000,000	878,000,000
145	3	1,791,000,000	1,791,000,000

* 상기 전용면적 85㎡ 초과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납부일정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계약 시	2023.10.12	2023.12.19	2024.03.19	2024.06.18	2024.09.24	2024.12.17	2025.03.18

*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농협은행	301-0328-6973-01	송어리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HDC현대산업개발(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동·호수

• 상기 계약은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개인별 납부계약(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는 계약체결 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V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매년안정화공급대상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의 당첨 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취소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정·자기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호 미적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시(단, 거주조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신청 자녀수가 많은 (태아포함)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혼인가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가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① 우선공급 [세대주의 50%(소수점 이하 올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일반공급 [세대주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③ 추첨공급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일반공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와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주택을 구입하는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를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단독세대 -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추첨제로 청약 가능
 - 1인 가구(단독세대가 아닌 자)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며,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 시 추첨제로 청약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① 우선공급 [세대주의 50%(소수점 이하 올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일반공급 [세대주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 ③ 추첨공급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일반공급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3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및 1인 가구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단, 1인 가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입주자처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재청약 통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V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재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처측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2.08.18.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유연하지 않습니다).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만 한함) 청약접수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 증빙, 동별, 호별, 항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고, 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 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점수의 선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 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입주자처측 예치금액]			
구 분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거주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경쟁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약양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선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합니다.(청약착오,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선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처측 순위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1순위	전용 60㎡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측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잔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④ 주택약양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가점제 40% 추첨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전용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측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잔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④ 주택약양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 추첨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측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잔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약양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입주자처측에 가입한 자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식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름. (가제사형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341-10번지

042) 716-1245

총 1,974세대 중 일반분양 1,353세대 [전용 59㎡ / 76㎡ / 84㎡ / 99㎡ / 145㎡]